

제 3 2 7 호

1972. 12. 1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444, 6090

시 보

차

례

◎ 규 칙

- 제 1272 호 수도행정 자문위원회 조례시행
 규칙중 개정규칙 3
- 제 1273 호 서울특별시 연료대책 용자규
 칙중 개정규칙 6
- 제 1274 호 도시개발촉진에 따른 서울특
 별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시행규칙 7

◎ 사 령..... 8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규 칙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2년 12월 9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272 호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
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위원회간사와 서기) ① 본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과장, 서기는 기획관리계장이 된다.

제 3 조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 ① 각 분과위원회는 주관국장이 운영한다.

② 비상계획관은 비상계획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③ 주택관리관은 주택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④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개발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⑤ 관광운수국장은 다음 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1. 교통분과위원회

2. 관광분과위원회

⑥ 보건사회국장은 다음 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1. 보건분과위원회

2. 사회복지분과위원회

3. 부녀복지분과위원회

⑦ 청소국장은 환경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⑧ 산업국장은 다음 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1. 유통체계개선 분과위원회.

2. 연료대책 분과위원회

3. 공업진흥 분과위원회

⑨ 건설국장은 건설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⑩ 수도국장은 상수도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⑪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지하철건설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⑫ 소방본부장은 소방대책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제 4 조 (비상계획분과위원회) ① 비상계획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민방위체제의 확립을 위한 기본 방침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동원계획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

3. 시민이동 계획 및 도강수단에 관한 사항.

4. 도시건설에 따르는 방위기능에 관한 사항

5. 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②간사는 계획운영과장, 서기는 계획계장이 된다.

제 5 조 (주택분과위원회) ①주택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2. 아파트 건립에 관한 조사연구
3.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
4. 불량건물 정리에 관한 사항

②간사는 주택행정과장, 서기는 주택계획계장이 된다.

제 6 조 (도시개발분과위원회) ①도시개발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가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도시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시계획 일반에 관한 사항

②간사는 도시계획과장, 서기는 운영계장이 된다.

제 7 조 (교통분과위원회) ①교통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통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운수업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대책 수립
3. 기타 시민교통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②간사는 운수행정과장, 서기는 운수행정계장이 된다.

제 8 조 (관광분과위원회) ①관광분과위

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2. 관광업체 육성책 수립 건의
3.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②간사는 관광과장, 서기는 관광진흥계장이 된다.

제 9 조 (보건분과위원회) ①보건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2. 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민방역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염병 예방대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6. 약품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민보건에 관한 사항

②간사는 보건행정과장, 서기는 보건행정계장이 된다.

제 10 조 (사회복지분과위원회) ①사회복지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영세민 구호에 관한 사항
2. 근로차 원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 시민윤리 천설 및 정서함양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회정화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②간사는 사회과장, 서기는 사회계장이 된다.

제 11 조 (부녀복지분과위원회) ①부녀복지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부녀교양 향상에 관한 사항
2. 윤락여성 선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부녀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②간사는 부녀과장, 서기는 부녀보호계장이 된다.

제 12 조 (환경분과위원회) ①환경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2. 오물처리에 관한 사항
3. 오물수거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간사는 청소제1과장, 서기는 작업계장이 된다.

제 13 조 (유통체계개선분과위원회) ①유통체계개선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필수품의 수급상황 분석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필수품의 가격동향 및 용역요금의 분석과 대책에 관한 사항
3. 협정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가대책 일반에 관한 사항
5. 상도의 양양에 관한 사항

②간사는 상정과장, 서기는 상정계장이 된다.

제 14 조 (연료대책분과위원회) ①연료대책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료개발 방안의 조사연구

2. 연료수급 및 그 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3. 도시연료의 가스화, 유류대체와 그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료대책 일반에 관한 사항

②간사는 연료과장, 서기는 연료계장이 된다.

제 15 조 (공업진흥분과위원회) ①공업진흥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업지 조정에 관한 사항
2. 공업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장유치에 관한 사항
4. 기술진흥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업진흥 일반에 관한 사항

②간사는 공업과장, 서기는 공정계장이 된다.

제 16 조 (건설분과위원회) ①건설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건설 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도로, 하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

3.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시건설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

②간사는 건설행정과장, 서기는 건설

행정 제장이 된다.

제 17 조 (상수도분과위원회) ①상수도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종합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2. 급수시설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3. 수도요금의 사정에 관한 조사연구
4. 누수방지 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5. 기타 상수도 설비의 개량에 관
한 사항

②간사는 업무과장, 서기는 서무계장
이 된다.

제 18 조 (지하철건설분과위원회) ①지
하철건설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철건설 기본계획의 방향 설
정에 관한 사항
2. 지하철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적
조언 및 건의
3. 기타 지하철 건설에 따른 일반
적인 기술분야의 조사연구

②간사는 관리과장, 서기는 서무계장
이 된다.

제 19 조 (소방대책분과위원회) ①소방
대책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
다.

1. 소방력 기준책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소방용 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방행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간사는 소방행정 과장, 서기는 소방
행정 계장이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연료대책 용자규칙중 개
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2년 12월 9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273 호

서울특별시 연료대책용자규칙중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연료대책 용자규칙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하이자자는 정부 재정자금의 대하
금리를 적용하고 은행대하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계약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2년 8월 10일 현
재 용자금 상환 잔액에 대한 대하이
자는 1972년 8월 10일부터 이 조례
에 의한 것으로 한다.

도시개발의 촉진에 따른 서울특별시
세의 파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시행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2년 12월 9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274 호

도시개발의 촉진에 따른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의
촉진에 따른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등의 범위) 조
례 제 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영동, 잠실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와
여의도 택지조성 사업지구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지구를 말
한다.

제 3 조 (주차면적의 계산) 조례 제 2
조 제 3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주차면적 계산은 출입로
및 승강구등 통로를 포함하여 자동
차 1 대당 점유 면적을 15평방미터
로 한다.

제 4 조 (정당한 사유의 의의) 조례
제 2 조 제 3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라 함은 건축법
상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으로
부터 입주 또는 사용을 불허한 처
분을 받았거나 지진, 풍수해, 낙뢰,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사용불능
인 경우를 말한다.

제 5 조 (소공, 무교지구의 범위) 조례
제 2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소공,
무교도시 재개발 사업지구라 함은
서울특별시나 조합이 사업의 기업자

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소공,
무교 도시불량지구를 합리적으로 재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 시행하는 사
업지역중 등 사업의 시행목적에 직
접적으로 제공된 건물과 토지를 말
한다.

제 6 조 (소유권양도의 의의) 조례 제 2
조 제 4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유
권의 양도라 함은 민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토지 또는 건
물의 사용, 수익 및 처분권의 일체
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 (최초 취득의 의의) 조례 제
2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
취득한 자라 함은 사업의 시행자로
부터 직접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수하였거나 양수키로 된 자를 말
한다.

제 8 조 (서울개발제한구역의 범위) 조
례 제 2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의 범위
는 서기 1972년 12월 11일자 건
설부 고시 제 46 호 해당 지역으로
1 필지의 지적이 모두 고시선내에
저축되는 토지로서 지상건물이나 시
설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제 9 조 (면제신청등) ①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의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사항
을 기재한 면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 번호, 성명, 생년월일

2. 재산의 종류

3. 재산의 소재지

4. 지목, 구조

5. 지적 건평

6. 공익사업의 용에 공하게 된 년월일

7. 신청 사유

8. 사용자의 주소, 성명

9. 신청인의 주소, 성명

②전항에 의한 면세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세 면세 여부에 관한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종류

2. 재산의 소재지

3. 지목, 구조

4. 지적 변경

5. 용도

6. 결정 년월일 내용 사유

③구청장이 면세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제2항 규정의 예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서기 1972년 4월 22일 공포 서울특별시조례 제 703호 도시개발의 촉진에 따른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사 령

◎ 1972. 12. 8.

양정파 농림기사 김응태
성동구 파견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